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1. 6. 26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 7. 2

다. 상정일자 : 제10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3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공유재산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 계약시에 포함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및 생략 가능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을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 개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꾀하고자 함.
- 공유재산의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갈음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처리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공유재산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0. 10. 20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 공유재산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공유재산 대부제도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